



호텔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

2017-교육미디어-1113

△ 재해사례



- 중식요리사로 근무하여 반복되는 작업과 무거운 팬을 들어야 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의 통증 호소
- 침대시트 교체 작업을 수년간 해오던 중 손목의 뼈가 튀어나오고 가벼운 물건조차 들 수 없게 된 재해

호텔 종사자

- 호텔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, 객실안내, 짐 운반, 객실예약,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, 객실열쇠관리, 객실정리, 세탁보급, 음식 제공 등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



유해·위험 요인

- 고객의 편의를 우선시 하는 호텔업 특성상 작업 공간이 근로자에게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어 부적절한 자세를 유발하며, 벨보이, 주방 근로자들은 중량물 취급 작업이 많기 때문에 작업 시 많은 힘을 필요로 하게 된다. 조리나 청소작업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동작이 포함되는 작업이 많아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.

호텔업의
근골격계질환
원인

부적절한
자세

과도한
힘의 사용

반복적인
동작

그 밖의
요인들



유해·위험 요인

호텔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유해·위험요인

유해요인	대표 공정	공정 및 유해원인
반복성	룸 메이드, 조리, 세탁	같은 근육, 힘줄 또는 관절을 사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동작 되풀이
부적절한 자세	벨 맨, 룸 메이드, 조리, 세탁, 프런트 데스크	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팔을 뻗음, 비틀, 구부림, 머리 위 작업, 무릎을 꿇음, 쪼그림, 손가락으로 집기 등의 불편한 자세
과도한 힘	벨 맨, 룸 메이드, 조리, 세탁	물체 등을 취급할 때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, 밀거나 당기기, 돌리기, 휘두르기, 지탱하기, 운반하기, 던지기 등과 같은 동작으로 인해 근육의 힘 사용
접촉 스트레스	벨 맨, 조리	작업대, 수화물 등의 모서리, 작업공구(칼, 식기 등) 등으로 인한 손, 손목, 팔 등의 연속적인 자극과 압박
정적 자세	프런트 데스크, 벨 맨	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업무 수행
기타	벨 맨	극심한 저온 또는 고온 노출

건강장해 예방대책

- 주방 근로자, 웨이터, 바 직원, 예약 안내원, 벨보이 등 장시간의 입식 작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 받침대를 사용하도록 하고, 작업장에 매트(바닥)를 지급하거나, 발등과 밑창의 쿠션감이 좋은 신발 제공



발받침대



보조의자



피로방지 매트

- 객실 정리작업을 하는 룸 메이드에게 무릎보호대를 착용토록 하고 작업방법 개선
 - 침대커버 교체 시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무릎을 굽히고 침대를 들어 올려서 작업
 - 화장실 정리 및 세척 시에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조 도구 사용

- 주방 근로자, 벨보이, 룸 메이드, 웨이터의 과도한 힘 사용을 줄이기
 -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 시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한 교육 실시



- 중량물 들기 작업 시에는 2인 1조 작업을 하며, 가급적 중량물의 무게를 줄여서 작업
- 무거운 냄비나 용기 등을 운반할 경우에는 팔과 등의 당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구(받침대 및 이동대차 등) 사용하며, 당기기보다는 밀는 방식으로 작업
- 작업용도에 알맞은 인간공학적인 디자인의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
- 바퀴 고정장치, 충격흡수재 등 안전장치가 있는 손수레 및 이동대차 사용
- 무거운 물건은 가슴 높이 아래, 무릎 높이 위(안전작업 부위) 정도 높이에 보관
- 근로자가 테이블의 식기를 치울 때 주방과 가까운 곳에 간이 받침대 설치하는 등 운반거리 및 작업 횟수 줄이기
- 조리종사원, 룸 메이드 등의 반복적인 동작을 줄이기
 - 음식재료 준비 시 커터기, 믹서 등 기계 및 자동 식기 세척기 사용
 - 여러 부위의 근육 사용을 위해 다양한 동작으로 작업



관련 법령 및 작성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
 - KOSHA GUIDE H-107-2012 호텔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
- ※ 해당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▶ 정보마당 ▶ 법령/지침 ▶ 안전보건 기술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